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정 2016. 9. 23
개정 2019. 2.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경상북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라 한다)는 도체육회 규약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경북종합체육대회를 매년 도내에서 개최한다.
② 경북종합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체위향상과 도민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지방체육의 저변확대 및 우수신인 선수 발굴 육성과 경북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 주관) 종합체육대회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공동 주최(이하 “주최측”이라 칭함)하고, 개최지 시·군과 시·군체육회가 주관하며, 경북종합체육대회는 도체육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북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칭한다)라 함은 도와 도체육회가 주최하는 경북도민체육대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말한다.
2. “경북도민체육대회”라 함은 도체육회에 가입된 하계종목 단체 중 일부 종목의 초중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민체전”으로 한다.
3.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라 함은 도체육회에 가입된 일부 종목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민대축전”으로 한다.
4.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라 함은 도체육회에 가입된 일부 종목의 60세 이상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어르신대회”로 한다.

제4조(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도체육회는 도종합체전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중계방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대회 횟수) ①도민체전은 1963년 대구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
②도민대축전은 1991년 경주시·구미시에서 분산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
③도어르신대회는 통산횟수를 기산하지 않고 개최연도로 표기하며 1996년도 대회를 첫 번째 대회로 한다.

제6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도민체전은 4월 또는 5월 중에, 도민대축전은 9월 중에 도어르신대회는 5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개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②도민체전 4일, 도민대축전은 3일 도어르신대회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가 국내 또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연도에는 종합체육대회 개최시기 및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④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의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하여 도종합체전 기간 중 경기진행이 어려운 종목은 대회 기간 전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경기행사 제한) 도종합체전 개최일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시군체육회 및 도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대회상징마크) ①도민체전, 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의 상징마크 선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대회표어) ①도민체전, 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 표어는 별도로 정한다.
②조직위원회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회가) ①도민체전의 대회가는 체육대회가로 한다.
②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는 도민체전 대회가를 쓰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 대회가에 관하여 도체육회는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직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대회엠블럼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① 조직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에 관한 모든 권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휘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휘장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도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회 종료 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에 관한 모든 권리는 도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경북종합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도종합체전 준비를 위하여 경북종합체육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경북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북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대회엠블럼 등과 이를 사용한 휘장사업에 대한 승인
5. 기타 경북종합체육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6.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6조(구성) ①위원회 구성은 도체육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체육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도체육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③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하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대한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5.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6.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도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임기는 도체육회 임원의 임기로 하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 3 장 개최지 선정

제19조 (도종합체전의 유치신청) ①도종합체전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 시장(군수)의 보증서와 함께 도종합체전 개최 2년 전에 경북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기장의 시설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도회원종목 단체의 경기장 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포함)
4. 선수단의 숙소 및 수송과 관련한 계획
5. 기타 대회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유치를 신청하는 시·군체육회는 도체육회가 정하는 유치신청금을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도체육회는 유치신청금을 예비심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어, 개최지 결정 후 잔액은 신청 시·군체육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군체육회는 유치신청금 납부 후 예비심사 이전이라도 유치신청금 반환 을 요구할 수 없다

④도민체전의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체육회는 도민체전 개최 이후 최소 7년이 경과 되어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경과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도종합체전의 개최지 결정) ①도종합체전의 개최지는 대회개최 연도로부터 2년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유치를 신청한 시·군체육회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다.

②체육회는 유치신청 최종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최종점검을 마치고 개최지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유치신청 시·군체육회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 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유치신청 지역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현장실사 평가결과로 2개 시·군체육회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⑤도체육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도종합체전의 개최는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에서 당해연도 도민대축전을 개최 하고 다음연도에 도어르신대회를 개최 한다.

제21조(개최지 시·군체육회의 의무) ①개최가 결정된 시·군체육회는 도체육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사회에서 발표한 유치신청 계획서에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의 협의를 득한 유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승인조건과 제 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개최가 결정된 시·군체육회는 대회 개최가 확정된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서와 유치신청서에 근거한 이행 계획과 추진실적을 도체육회가 요구시 제 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유치신청 계획서에 따른 사후 점검이 필요할시 개최지와

함께 실시하고 협약서 및 유치신청서에 따른 계획 미 이행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로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개최가 결정된 시·군체육회가 제1항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최시기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기 결정된 시·군체육회의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한 후 경상북도 및 도체육회가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도민체전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군체육회가 제1항의 협약과 유치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반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체육회는 협약 및 유치계획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반납한 연도부터 향후 20년간 도종합체전 등의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개최지 확정 후 개최 시·군은 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회에 관한 종합사업계획서는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도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최지 조직위원회

제23조(설치) 개최지는 도민체전, 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 조직위원회는 도민체전의 조직위원회를 승계할 수 있다.

제24조 (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1년 전에 구성하여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구성)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제27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 등의 선임방법) ① 개최지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지의 시장(군수)가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② 조직위원회에는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7조(집행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 시·군 관련 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 시군의 부단체장, 개최시·군 교육장 및 시·군체육회 부회장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식전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환영안내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의 장의 직급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8조(개최지역 운영위원회) ① 개최지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진행되는 읍·면·동 지역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개최지역 읍·면·동의 장이 한다.
2. 부위원장은 개최지역 읍·면·동의 체육회임원 또는 기타 인사로 한다.
3. 운영위원은 개최지역 읍·면·동의 체육회 임원,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기타인사가 위원이 된다.

② 읍·면·동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담당자는 대회준비 총괄담당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29조(해산)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에 운영되며 종합체육 대회 종료 후 해산한다.

제 5 장 경기종목

제30조(도민체전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 종목은 종합체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도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체점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하며 도민 대축전, 도어르신대회는 종합순위를 정하지 않으며 종목별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식종목별 점수 배점은 경북종합체육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민체육대회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경기와 비기록경기

가. 기록경기 : 육상, 수영, 자전거, 역도, 궁도, 사격, 룰러, 골프, 볼링, 보디빌딩, 산악 (이상 11개 종목)

나. 비기록경기 : 축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검도, 배드민턴, 태권도, 우슈 (이상 15개 종목)

2. 단체경기와 개인단체 및 개인경기

가. 단체경기 :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이상 4개 종목)

나. 개인단체전경기 :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배드민턴 (이상 5개 종목)

다. 개인경기 : 육상, 수영,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태권도, 롤러, 씨름, 유도, 궁도, 사격, 볼링, 골프, 보디빌딩, 우슈, 산악 (이상 17개 종목)

④제3항제2호 단체경기 및 개인단체전경기는 단일팀 또는 혼성으로 하고 육상, 수영,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태권도 경기는 혼성으로 한다.

⑤경기종목중 비기록경기는 토너먼트식 경기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3항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 연도 도민체전에 시부 6개, 군부 7개 미만의 시·군이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단, 기초종목 및 정책적 육성종목(경북체육회 판단)은 예외로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정식 경기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⑧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에 최소 5개 미만의 시·군이 참가(3년 평균)한 경우에는 도민체전의 시범종목에서 제외한다.

제31조(도민대축전의 경기종목) ①경기종목은 경북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종목으로 제한 한다.

②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의 정식종목은 다음과 같다.

검도,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씨름, 야구, 체조, 육상, 정구,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풋살, 합기도, 보디빌딩
③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의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10개 이상의 시·군지회가 결성된 종목으로 한다. 단,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다.
2. 위 호에 포함되는 종목 중,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은 정상화 될 때 까지 대축전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가. 10개 시·군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2년 이상 참여 시·군이 4개 이상이 안 되는 경우

나. 종목의 각 부별로 2년 이상 참여 시·군이 4개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종목

다. 대회기간 중 연속으로 2년 이상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

④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시범종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시상에서 제외된다.

1. 도체육회에 회원단체로 신규 가입하여 도민대축전에 처음 참여하는 종목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경기운영에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체육회에 가입한 도회원종목단체 중 시·군체육회 결성이 1/2 이상 2/3 미만이고,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대축전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

3. 대회에 참여하는 시·군체육회 특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도체육회에 시범 종목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도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4.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새로이 종목별 경기를 재구성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시범종목으로 한다.

⑤ 제31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신규 개최를 희망하는 종목은 대회개최 1년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경북체육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시·군 종목별연합회 구성현황

나) 시·군 동호인클럽 및 활동 동호인 등록현황

다) 대회참가요강 및 경기진행방법

라) 경기시설 및 용품 소요현황

마) 소요경비 산출현황

바)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2조(도어르신대회의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도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종목으로 제한 한다.

②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정식종목은 다음과 같다.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체조, 정구,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③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10개 이상의 시·군지회가 결성된 종목. 단,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다.

2. 위 호에 포함되는 종목 중,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은 정상화 될 때 까지 도어르신대회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가. 10개 시·군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2년 이상 참여 시·군이 8개 이상이 안 되는 경우

나. 대회기간 중 연속으로 2년 이상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

④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시범종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시상에서 제외된다.

1. 도체육회에 회원 단체로 신규 가입하여 경북어르신대회에 처음 참여하는 종목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경기운영에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중 시·군체육회 결성이 1/2이상 2/3미만이고,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
3. 대회에 참여하는 시·군체육회에서 특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도체육회에 시범 종목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도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4.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새로이 종목별 경기를 재구성하여 정상화 될 때까지 시범종목으로 한다.

⑤제31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신규 개최를 희망하는 종목은 대회개최 1년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경북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시·군 종목별연합회 구성현황

나) 시·군 동호인클럽 및 활동 동호인 등록현황

다) 대회참가요강 및 경기진행방법

라) 경기시설 및 용품 소요현황

마) 소요경비 산출현황

바)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3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대회임원 및 부서

제34조(임원구분) 도종합체전의 임원은 대회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개최지집행 임원, 개최지운영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35조(대회임원) ①대회임원은 경북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경북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2. 부대회장은 도체육회 부회장과 경상북도 교육감 및 개최지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3. 임원은 체육원로, 자문위원, 시·군 자치단체장·교육장·도회원종목단체장, 개최시·군회원종목단체장으로 한다.
4. 집행위원장은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5. 집행부위원장은 개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6. 집행위원회는 경북체육회 임원, 위원회 위원, 직원, 개최 시·군체육회의 임원과 개최 시·군의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7. 대회운영부는 경북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운영부서) 본 대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에 부장과 필요한 차장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② 경기부 ③ 기록부 ④ 심판부 ⑤ 시설부 ⑥ 섭외부
⑦ 경호부 ⑧ 의무부 ⑨ 식전부 ⑩ 성화부 ⑪ 의전부

제37조(해당회원단체 임원)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38조(개최지 집행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 집행임원과 개최지역 운영위원은 제28조에 따른다.

제 7 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39조(중계방송권) ①도종합체전의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중계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등 녹화 제작물 등에 관한 권리인 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②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40조(주관방송사) ①도체육회는 도종합체전의 중계방송 권리, 개·폐회식 등 행사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주관방송사는 전국 및 지방에 네트워크를 갖춘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주관방송사의 선정 및 주관방송사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④조직위원회는 주관방송사 선정과 운영에 관한 도체육회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광고 등의 설치) ①도종합체전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장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관한 권리는 도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상호 협의하여 행사한다.
②경기장내 바닥광고, 펜스광고 및 링, 매트, 선수인식번호표 등에 설치되는 광고는 도체육회와 조직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기장내 광고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 8 장 소청 및 처리

제42조(소청심의위원회) 도종합체전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경기운영에 따른 종목별 경기에 대한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43조(위원회 구성) 소청심의위원회는 본회 상임부회장을 위원장, 집행위원장 및 경기력향상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무, 경기, 기록, 심판, 시설, 섭외, 식전, 성화, 의전부장 등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참가금지) 도종합체전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 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도종합체전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제45조(규정준수의무) ①조직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 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대회운영

제46조(경기운영) 도종합체전의 모든 경기는 해당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도체육회의 경기운영 내규 및 참가요강에 따라 운영하며 대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요원(심판, 운영요원, 보조요원 등)에 대한 체재비 등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7조(참가요강 및 내규) 대회참가, 경기종목, 경기운영, 경기장, 채점 및 시상, 개·폐회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참가요강 및 내규로 정하며, 참가요강은 대회개최 3개월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일정 및 대진추첨)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도종목단체와 협의하여 본회가 결정하며, 경기대진은 각 시·군체육회 대표자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가 결정하며, 각 경기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49조(경기방법) 본 대회 경기는 시대항 및 군대항으로 진행한다. 단 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는 참가 시·군에 따라 시·군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0조(경기심판) ①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주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당해 경기부문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당해 경기부문 심판부장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에 관한 사항은 대회본부 심판부장 및 소청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51조(부정선수 이의신청 및 지위변동) 부정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해당종별 성적을 몰수(0점처리)하고 차기대회의 해당종별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그 선수 또는 해당종별이 취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고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①도민체전의 경우 선수자격에 관한 이의신청은 소정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대리출전에 한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도민대축전의 경우

1. 대회개막 이후 무자격선수 출장 시 당해 팀 및 개인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해당경기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2. 참가신청을 하고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3.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되었을 경우 소속 시·군은 당해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 단체 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 종목은 당해 세부종목을 말한다.

제52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본 대회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지내 시설을 배정하여야하며 부득이 타 지역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과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본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기장 배정과 함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회원종목단체의 사용 확인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최지는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경기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3조(평가회 개최) 도종합체전의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제 10 장 참가신청

제54조(참가신청) ① 각 시·군별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참가요강에 의거 소정기일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장이 경북체육회에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 11 장 채점 및 시상

제55조(순위결정) 도민체육대회의 시·군별 순위는 경북체육회가 제정한 대회 채점 내규에 의거 채점하여 시·군별 종합순위를 결정하며 도민대축전, 도어르신 대회는 종합순위 결정없이 부별성적 시상으로 한다.

제56조(채점) 도민체육대회의 채점은 채점 내규에 의거 참가신청 시·군수에 따라 최하위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배점하며 참가 시·군의 수는 주최측이 발표한 대진표에 의한다.

제57조(시상구분) 본 대회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폐회식에서 시상한다.

1. 시·군별 종합성적 시상
2. 경기부문별 종합시상
3. 개인 및 단체입상
4. 성취상
5. 모범선수단상
6. 입장상
7. 최우수선수상
8. 특별표창

제58조(시상방법) 도종합체전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북도민체육대회

1. 종합성적 : 1, 2, 3위 시·군에 회장기 및 상배·상장수여

2. 경기부문별 종합성적 : 1, 2, 3위 시·군에 회장배 및 상장수여
3. 개인 및 단체성적 : 1, 2, 3위에 상장수여
4. 성취상 : 시·군별 1위에 회장배 및 상장수여
5. 모범선수단상 : 시·군별 1위에 회장배 및 상장수여
6. 입장상 : 시·군별 1, 2, 3위에 회장배 및 상장수여
7. 최우수선수상 : 상배 및 상장수여
8. 특별표창 : 상패(배) 또는 상장수여

② 경북도민생활대축전

1. 경기종목별 종합성적 : 1, 2, 3위 시·군에 도지사 상장 수여
2. 개인 및 단체 입상성적 : 1, 2, 3위에 회원종목단체장 상장 수여

③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1. 경기종목별 종합성적 : 1, 2, 3위 시·군에 도지사 상장 수여
2. 개인 및 단체 입상성적 : 1, 2, 3위에 회원종목단체장 상장 수여
3.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별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 13 장 개·폐 회식

제59조(참가) ① 도민체전 개·폐회식에 도체육회가 배정하는 임원·선수를 참가 시켜야 한다.

② 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 개회식에 도체육회가 배정하는 임원·선수를 참가 시켜야 한다.(폐회식 없이 종목별 시상식 거행)

제60조(일정) 개회식은 대회 하루 전, 폐회식은 도민체전은 최종일 경기종료 후 거행하며, 도민대축전, 도어르신대회는 종목별 경기 종료시 종목별로 거행한다. 단, 특별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대회기) ① 개회식이 거행되는 운동장에 대회기가 항시 게양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도민체육대회기 이양은 폐회식에서 개최지 체육회장이 경북체육회장에게 반납하고 경북체육회장은 다음 개최지 체육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제 14 장 파견 및 관리

제62조(파견) 회장은 도종합체전의 성공적 개최 및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대회 개최지에 파견된 직원의 복무관리는 도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2.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회 개최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파견된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경북도민체육대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지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최지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북도민체육대회 규정
2.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규정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전 경북도민체육대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 축전을 인용한 규정 또는 내규는 본 규정에 의거 확정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9.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